

고 소 장

고 소 인 별지1 기재 목록과 같음
고소인들의 대리인 별지2 기재 목록과 같음

피고소인 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2. 김용현 (국방부 장관)
3.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4.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5.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들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형법 제87조 내란죄, 군형법 제5조 반란죄,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 교사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 제166조 제1항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하였으므로,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고소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사회인권단체 소속 대표 및 활동가입니다.

피고소인 1.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 피고소인 2. 김용현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피고소인 3. 박안수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자 2024. 12. 3. 임명된 계엄사령관입니다. 피고소인 4. 김봉식은 대한민국 서울경찰청장이고, 피고소인 5.는 이 사건에서 위헌, 위법하게 선포된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다수의 군인과 경찰들입니다.

2. 범죄사실

가. 내란(우두머리·모의참여·주요임무종사)

피고소인1. 윤석열은 2024. 12. 3. 22:30경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였고, 피고소인 2.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를 사전에 건의하여 모의하였으며, 피고소인 3. 박안수는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모의하고 계엄사령관으로서 같은 날 23:00경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4. 김봉식은 같은 날 23:10경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상황실에 국회동원 갑호 비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 3. 박안수는 2024. 12. 4. 00:08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피고소인 1. 윤석열 및 피고소인 2. 김용현과 사전 모의에 따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능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수준의 특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단, 제1공수여단, 특수작전항공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 등 총기를 소지한 군인들을 출동시켜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4. 김봉식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소속 약 120명의 경력에 더하여 추가로 수백 명의 경찰력을 투입시켜 국회 정문을 봉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 1.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로서, 피고소인 2. 김용현, 피고소인 3. 박안수, 피고소인 4. 김봉식은 각 내란모의참여·주요임무종사자로서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피고소인 1. 윤석열은 22:50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피고소인 3. 박안수는 23:00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한 후 국회에 군인들을 출동시키고, 피고소인 4. 김봉식은 그의 명령을 받은 성명불상의 기동대원들을 국회에 출동시켰습니다).

나. 반란(수괴·모의참여·지휘·주요임무종사)

피고소인 1. 윤석열은 반란수괴로서, 피고소인 2. 김용현, 피고소인 3. 박안수, 피고소인 4. 김봉식은 각 반란모의참여·지휘·주요임무종사자로서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 직권남용체포 교사

피고소인 1. 내지 피고소인 4.는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에서 국회 본청에 진입한 공범인 성명불상의 군인들과 경찰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우원식·이재명 등 국회의원 190명 및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국회 진입을 막거나 체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피고소인 3.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피고소인 4. 서울경찰청장 명령을 받은 성명불상의 군인들과 경찰 공무원들을 포함)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도록 교사하였으나, 2024. 12. 4. 01:00경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의 해제가 의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소인 1. 내지 피고소인 4.는 공모하여 2024. 12. 4. 00:08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우원식·이재명 등 국회의원 190명의 계엄 해제 의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성명불상의 군인들과 경찰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마. 국회법위반 (국회법 제166조 제1항 국회 회의 방해죄)

피고소인 1. 내지 피고소인 4.는 공모하여 2024. 12. 4. 00:08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소인 5.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로 하여금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부지 경계, 본청 정문 및 청사 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협박, 주거(건조물)침입,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피고소인 5.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3. 고소 경위

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계엄

피고소인 1. 윤석열은 2024. 12. 3. 22:30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은 아래와 같이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1) 내용상 하자

우선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라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자체 또는 입헌체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는 교란 상태가 아닌 이상 계엄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학계의 확립된 해석입니다.¹

피고소인 1은 2024. 12. 3. 22:30 긴급담화에서 '다수의 검사 탄핵,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및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 예산 삭감' 등을 비상계엄의 이유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위와 같은 계엄 선포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절차상 하자

또한 비상계엄은, ①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의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1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실질적인 심의 및 숙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 졌습니다. ② 계엄법 제3조에 의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1.은 생방송 외에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③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1.은 국회에 통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나. 내란 행위 등

헌법 제87조 '내란의 죄'의 행위태양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헌법 제91조에 따르면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정당활동을 금지할 수 없음에도, 피고소인 1. 윤석열은 이 사건 계엄 선포와 함께 피고소인 3.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아래와 같이 포고령 제1호를 내린바 그 내용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¹ 법제처, 헌법주석서III, 549쪽.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없이 체포 및 구금한 후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상 각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헌법 제77조 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 제4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포고령 제1호 제1항에서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박탈했다는 점에서도 헌법에 명백히 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계엄법 제11조 제1항에서도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계엄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제1항)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정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한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고령(제1호) 제1항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처단한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강압행위에 해당하여 내란죄에서의 폭동에 해당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를 하여, 2024. 12. 3. 22: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찰로 하여금 22:50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여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군대가 무장을 갖추고 2024. 12. 3. 23:48분부터 다음날 01:18분까지 국회에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무장 군인들은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의사당 내부로 난입하여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임단 및 제1공수여단 병력 300여 명을 동원하여 국회 경내에 침입하도록 하였고, 특히 우원식 국회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의 체포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동원한 군 병력은 2024. 12. 4. 00:08경부터 01:10경 사이에는 총기 등으로 무장한 채 국회 본관에 침입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국회 직원들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본관 진입이 저지되자 창문을 파손하여 본관에 침입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유형력 행사는 내란죄를 성립시키는 ‘폭동’의 요건인 폭행 및 협박으로 인정하기에 넉넉한 것으로, 이미 내란죄의 기수에 이른 것입니다.

4. 수사 촉구사항

가. 엄정한 수사를 위하여 특별수사본부 등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비롯한 국헌 문란의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소인들의 지위와 사안의 중대성, 피고소인들의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인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현직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철저한 수사를 개시하기 바랍니다.

나. 이 사건 내란행위에 공모, 가담한 자들을 공범으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내란 등 행위를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한 국무위원, 경찰, 군 지휘부 등 책임자들을 공범으로 입건하여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공범으로 인정하였는바(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의 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내란행위 등은 위헌, 위법한 명령임이 명확하므로 위헌, 위법한 명령에 따른 복종행위는 범죄를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모, 가담자가 밝혀질 경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 중대한 반헌법행위이기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4조), 이 사건 내란죄 부분에 관하여는 대통령 재직중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 범죄의 중대성은 국가의 헌정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5. 결어

위와 같이 피고소인 1. 윤석열은 다른 피고소인들 및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신분을 망각한 채 헌법을 유린하는 중범죄인 내란죄, 반란죄 등을 범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의거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들의 지위상 자신 및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즉시 체포 및 구속의 필요성이 큼니다. 신속하게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한 수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4.

위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윤복남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철준, 최명준, 손난주, 김영기, 조지훈, 오세범, 이주희, 조세현, 권용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최석군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하주희, 김유정, 오민애, 신의철, 함승용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소현민

법무법인 해명

담당변호사 오선희

변호사 백민

변호사 서채완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최새안

변호사 최종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귀중